

부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2009. 12. 17) 상정 및 의결

2. 제안설명

(제안 설명자 : 교통관리과장 문병섭)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 → 제4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 제161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구 시가지 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7.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28호
의결 년월일	2009. 12. 23. (제157회)

제출년월일 : 2009. 11. 16.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1조 → 제49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8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 제161조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에 따라”로 하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
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구 시가지 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

7.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 -----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 -----.</p>
<p>제2조 (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p> <p>1.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p> <p>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이내의 전입금</p> <p>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p>	<p>제2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p> <p>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p> <p>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p> <p>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p>

현행	개정안
<p>4.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p> <p>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p> <p>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p> <p>7.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p> <p>8. 기타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p>	<p>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p> <p>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p> <p>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p> <p>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p> <p>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p>
<p>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p> <p>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p> <p>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p>	<p>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p> <p>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p> <p>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p>

현행	개정안
<p>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p>	<p>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p>
<p>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구 시가지 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p>	<p>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p>
<p>6. 도시교통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 등의 교통평가 및 이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p>	<p>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구 시가지 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p>
<p>7.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 관리</p>	<p>7. 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p>
<p>제6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p>	<p>제6조(준용) ----- ----- ----- ----- 따른다.</p>
<p>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필요한 ----- ---</p>